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- 부산광역시사하구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.12.31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.12.31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
-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조정 하는 등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, 주거용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(안 제8조)
- 미분양주택의 재산세는 5년간 1,000분의 3으로 과세하던 것을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 3년간 1,000분의 3으로 과세하도록 감면기간을 축소함(안 제20조)
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(안 제23조)
-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을 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라 폐지함(종전 제25조)
- 부산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함(안 제25조)
-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불합리한 조문정리
(안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3조, 제19조, 제21조)

3.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해당조항 수정과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없는 부분을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, 조례조문이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보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
- 주요 사항은 제8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종전 주거용에서 전부동산으로 확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불익을 받던 재산에 대한 이익을 확대해 주었고(제8조)
-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사항은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(제25조)
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종전 100%면제에서 50%로 축소하고(제23조)
-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대한 부산시의 시세감면 조례안을 3년간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, 구제도 3년간 면제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(제25조)
- 기타 조항들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항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것과 부칙에 적용시기를 2006. 12. 31까지로 하는등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2003. 12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